

법인임원 임면보고서

보고자	법인명				대표자 성명	
	소재지				전화번호	
임원선임 또는 해임내용	직위	임기	성명	생년월일	주소	출연자 등과의 특별한 관계 여부

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임원의 선임(해임)을 보고합니다.

년 월 일

보고인 사회복지법인 대표이사

(서명 또는 인)

시·도지사 귀하

첨부서류	1. 해당 임원의 선임 또는 해임을 결의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 2. 임원의 취임승낙서 및 이력서 각 1부 3.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1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부터 받은 이사추천서 1부 4. 임원 상호간의 관계에 있어 법 제18조제3항에 저촉되지 아니함을 입증하는 각서 1부 5.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하는 각서 1부	수수료 없음
------	---	-----------

유의사항

- ※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범위
1.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
- 가. 출연자
- 나. 출연자 또는 이사와의 관계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- 1) 6촌 이내의 혈족
- 2) 4촌 이내의 인척
- 3) 배우자(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)
- 4) 친생자(親生子)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(親養子) 입양된 사람 및 그 배우자와 직계비속
- 다. 출연자 또는 이사의 사용인 그 밖에 고용관계에 있는 자(출연자 또는 이사가 출자에 의하여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 그 밖에 고용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)
- 라. 출연자 또는 이사의 금전 그 밖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 및 그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
- 마. 출연자 또는 이사가 재산을 출연한 다른 법인의 이사
2. 제1호다목의 출자에 의하여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법인
- 가.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자 1인과 그와 제1호나목·라목 및 사용인 그 밖에 고용관계에 있는 자(이하 이 호에서 "지배주주"라 한다)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
- 나.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목의 법인과 그의 지배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
- 다.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목의 법인과 그의 지배주주 및 나목의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
- ※ 출연자 등과의 특별관계 여부
- 임원이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그 관계를 기재합니다.